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단1460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노동환

피 고 1. 주식회사 C

2. A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한솔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1,513원 및 그 중 19,571,928원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20. 1.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 A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12. 29. 접수 제249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신용보증계약 및 피고 A의 개인회생신청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9. 12.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간 2022. 9.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9. 12.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은 2017. 11. 11.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105072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9.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은 2017. 12. 8. 피고 D에게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50,4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9. 피고 D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4944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의 구상금채권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2. 28. E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 A의 “2018. 1. 31.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8. 4. 16. E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 20,139,5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8. 5. 6. 피고 회사로부터 567,670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① 대위변제금 잔액 19,571,928원(= 20,139,598원 - 567,670원), ② 법적절차비용 대지급금 399,585원[=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446,040원(2019. 1. 22. 228,020원, 2019. 1. 24. 218,020원) - 회수한 금액 46,455원(2019. 3. 26. 23,236원, 2019. 4. 16. 23,219원)], ③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손해금, ④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이다.

라. 피고 A의 파산 및 이 사건 소송 경과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8.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A은 2020. 3. 27. 의정부지방법원 2020하단20457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7. 피고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20. 10.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및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2019. 8. 16. 제기한 종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A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9,971,513원 및 그 중

원금 19,571,9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F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294,134,000원, 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325,000,000원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619,134,000원(= 294,134,000원 + 32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F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2. 7.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 기준 F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은 294,134,000원이다.

② G은 2014. 7. 26. 피고 A과 사이에 차용금액 및 미수령 이자금을 225,000,000원(원금 140,000,000원, 2007. 2. 20.부터 2014. 7. 26.까지 밀린 이자 85,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금 140,000,000원의 내역을 “2007. 2. 20., 2007. 21. 대여한 총 8,000만

원, 2014. 2. 4., 2014. 6. 11. 대여한 20,000,000원, 40,000,000원 총 60,000,000원, 그리고 2007. 2.부터 현재까지 밀린 이자 85,000,000원을 더한 총 22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G은 2016. 8. 29. 피고 A과 사이에 “2014. 7. 26. 차용금 225,000,000원, 2015. 11. 30. 1,500만 원, 2016. 8. 16. 대여한 1억 원 총 누적 차용금액 3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24%”, 이자지급일 “매달 말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6.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위 각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A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육안으로 보아 동일한 인영으로 보여 피고 A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달리 제3자가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G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은 340,000,000원을 초과하는데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25,000,000원이므로, 위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507,332,800원(= 토지 가액 497,760,000원 + 건물 가액 9,572,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다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고려하고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감정인의 감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합계 619,134,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507,332,8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A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태지영

[별지]

부동산 표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102㎡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집우 단층주택

59.83㎡

